

#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대한민국기업 통장약관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퇴직연금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신탁 계약 후 납입된 적립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

퇴직연금 사업자(은행·증권사·보험사)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

## 2 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등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 (2012 5.06 현재 이율은 세전 기준)

구 분	내 용			
가 입 자 격	퇴직연금 계약에 근거하여 적립금 운용을 하고자하는 자			
가 입 금 액	1원 이상			
가 입 기 간	<ul> <li>고정금리형 :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</li> <li>변동금리형 : 1년(3개월 회전), 3년(1년 회전), 5년(1년 회전)</li> </ul>			
이 율 (연 %)	- 고정금리형은 계약기간, 변동금리형은 회전기간 해당금리 적용			

	T		1	
중도해지 이율 (연%p)	기 간	금 리	비고	
	15일미만	0.3		
	15일이상 3개월미만	0.5	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	
	3개월이상 6개월미만	1.0		
	6개월이상 1년미만	1.0		
	1년이상 3년미만	2.7	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1년물 고시금리 적용	
	3년이상 5년미만	3.0	정기예금(만기일시지급식) 3년물 고시금리 적용	
	* 특별중도 해지시에는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이율(가산금리			
	포함)을 적용. 다만,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			
	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.			
만기 후 이율	-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재예치			
	-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적용			
부 가 혜 택1	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와 퇴직급여를 연금			
	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로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			
	- 복당기역당 최국원급원 경구 기업자들도 3회 이내에서 군일원물이 가능 			
계약의 해지	영업점에서 해지 가능			
예금자보호 여부	※ DC, IRP플랜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			
	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			
	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			
	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
	※ DB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

## 3 유의 사항

#### ■ 기타 유의사항

은행은 사정에 의해 **상품내용을 변경**하는 경우,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 관련 사항을 은행 **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**에 변경시행일 **1개월 전**부터 **게시**합니다. 단, 상품내용이 **고객에게 불리**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**개별 통보**(전화, 우편, 메일 등)합니다.

- ※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(☎1566-2566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금융감독원 : 국번없이 ☎1332, IBK기업은행 : ☎080-800-0119)

※ IBK기업은행은 금품·향응을 받지 않으며,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2-729-7490, e-mail: ibkethics@ibk.co.kr)